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04

발의연월일: 2021. 3. 30.

발 의 자:민홍철ㆍ기동민ㆍ김민기

김병기・김병주・김정호

김진표 • 박성준 • 송영길

송옥주 · 신동근 · 안규백

이용빈 · 이학영 · 정청래

정필모 · 홍영표 의원

(179]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등군사법원을 민간법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과 폐쇄성을 지적받아 왔으며 군 장병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사법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에 평시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분리하여 1심은 국방부 장관소속의 군사법원이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전시 군사재판 체제로의 용이한 전환 등을 위해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설치·운영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군 장병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는 사법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원의 종류는 군사재판 항소심을 전담하는 군사항소법원을 추가 하여 8종류로 함(안 제3조 등).
- 나. 군사항소법원에 사무국을 두며 군사항소법원장과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재직한 법관으로 임명함(안 제10조 및 제44조).
- 다. 군사항소법원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임명된 군판사 중에서 임명한 군사재판연구관을 둠(안 제5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종류"를 "8종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군사항소법원

제5조제2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을 "행정법원·회생법원 및 군사항소법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을 "행정법원·회생법원 또는 군사항소법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을 "특허법원·행정법원 및 군사항소법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은 "행정법원·회생법원 및 군사항소법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은 "행정법원·회생법원 및 군사항소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을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군사항소법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을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군사항소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법 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을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군 사항소법원"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 하는 사건 및 제40조의11에 따라 군사항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 건"으로 한다.

제3편에 제7장(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군사항소법원

제40조의8(소재지) 군사항소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0조의9(군사항소법원장) ① 군사항소법원에 군사항소법원장을 둔다.

- ② 군사항소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군사항소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군사항소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10(부) ① 군사항소법원에 부를 둔다.

② 군사항소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11(심판권) 군사항소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 1.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 2.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항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44조제2항 중 "회생법원장"을 "회생법원장, 군사항소법원장"으로 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군사재판연구관) ① 군사항소법원에 군사재판연구관을 둔다.

- ② 군사재판연구관은 군사항소법원장의 명을 받아 군사항소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군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 ③ 군사재판연구관은「군사법원법」 제23조에 따라 임명된 군판사중에서 임명한다.
- ④ 군사항소법원장은 국방부 소속 군판사를 군사재판연구관으로 근 무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른 고등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항소법원으 로 이관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고등군사 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군사항소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음의 <u>7종류</u> 로 한다.	<u>8종류</u>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8. <신 설></u>	8. 군사항소법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판사) ① (생략)	제5조(판사) ① (생략)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	②
법원·가정법원· <u>행정법원 및</u>	<u>행정법원</u> •회생법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u>원 및 군사항소법원</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제6조(직무대리)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특허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 <u>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u> 의 판	<u>행정법원·회생법원</u>
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	또는 군사항소법원
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②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⑤ (현
(생 략)	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	③ <u>특허법원·행정법원</u>
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및 군사항소법원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	
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	

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 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 ⑤ (생 략)

제9조의2 (판사회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
원・<u>행정법원 및 회생법원</u>과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 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 사회의를 둔다.

② (생 략)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
법원·가정법원·<u>행정법원</u> 및
<u>회생법원</u>과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
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	9조의2 (판사회의) ①
	<u>행정법원·회생법원 및 군사</u>
	항소법원
	② (현행과 같음)
제	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u>행정법원·회생</u>
	법원 및 군사항소법원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특허법원과 군사
	항소법원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보한다.

④ (생략)

- 제14조 (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 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 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 에 대한 재항고사건
 - 3. (생략)
-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 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u>제28</u> <u>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u> <u>권한에 속하는 사건</u>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세14조 (심판권)
<u>.</u>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
<u>허법원·군사항소법원</u>
2. 항고법원 · <u>고등법원 또는 항</u>
소법원・특허법원・군사항소법
인
3. (현행과 같음)
데28조(심판권)
<u>제28</u>
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및 제40조
의11에 따라 군사항소법원의 권
<u>한에 속하는 사건</u>

	1. ~ 3. (생 략)
<u><신 설></u>	제7장 군사항소법원
<신 설>	제40조의8(소재지) 군사항소법원
	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u><신 설></u>	제40조의9(군사항소법원장) ① 군
	사항소법원에 군사항소법원장
	<u>을 둔다.</u>
	② 군사항소법원장은 판사로 보
	<u>한다.</u>
	③ 군사항소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군사항소법원에 대해서는 제
	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u>정을 준용한다.</u>
<u><신 설></u>	제40조의10(부) ① 군사항소법원
	에 부를 둔다.
	② 군사항소법원에 대해서는 제
	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
	<u>다.</u>
<u><신 설></u>	제40조의11(심판권) 군사항소법원
	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u>사건, 항고사건</u>
	2.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항소법
	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44조(보직) ① (생 략)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희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u><신 설></u>

제44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생법원장, 군사항소법원
<u> 장</u>
제53조의3(군사재판연구관) ① 군
사항소법원에 군사재판연구관
<u>을 둔다.</u>
② 군사재판연구관은 군사항소
법원장의 명을 받아 군사항소법
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군사재
판에 관한 조사 ·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군사재판연구관은 「군사법
원법」 제23조에 따라 임명된
군판사 중에서 임명한다.
④ 군사항소법원장은 국방부에
대하여 소속 군판사를 군사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

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